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592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3. 10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03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03. 20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조문 변경(안 제1조)

나. 상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내용 삭제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)

다. 구체적인 허가기준 중 불필요한 조항 삭제(안 별표)

라.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4. 의견 제출

가. 관계법령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-성별영향 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53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1. 11. ~ 2023. 1. 3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.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개정목적 및 제출자

- 본 개정조례안은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내용 검토

- (안 제1조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(안 제2조)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별도 기재할 실익이 없어 정비하고, 제2호 보호시설의 정의는 [별표] 하단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(안 제3조) 조례의 적용범위의 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(제외대상 포함)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(안 제5조) 준용에 관한 사항은 기재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- (안 별표)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규제사항을 삭제하고,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2호의 내용 중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’ 은 ‘같은 법 시행규칙’ 으로 수정하는 것이 안 제2조에서 약칭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을 정비하고,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,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,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, 제출된 내용 중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.

- 다만, 상위법 개정시 관련조례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, 향후 부서별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※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6조제3항: 2019. 8.20. 개정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3. 20. 원안가결 함.